

서울특별시 신림선 도시철도 최초요금 결정을 위한 의견청취안

의안 번호	3096
----------	------

제출년월일 : 2022년 1월 21일
제출자 : 서울특별시장

1. 제안이유

신림선 도시철도의 개통을 앞두고 「서울특별시 민간투자사업에 관한 기본 조례」 제13조에 따라 최초요금 결정을 위해 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함

2. 주요내용

가. 징수대상 시설

- 시설명 : 서울특별시 신림선 도시철도
- 구 간 :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도동(셋강역) ~ 관악구 신림동 (관악산역)
총11개역(일반역7개소, 환승역4개소), 차량기지 1개소

나. 신림선 도시철도 최초요금

1) 도시철도 단독통행 시 요금

- 요금체계 : 서울시 지하철요금제(거리비례제)
- 요금현황

구 분	기본요금 (10km이내)		추가요금 (10km초과)
	카 드	현금 (일회용 승차권)	
일 반	1,250원	1,350원	- 10~50km : 5km마다 100원 - 50km 초과시 : 8km마다 100원
청소년	720원	1,350원	- 10~50km : 5km마다 80원 - 50km 초과시 : 8km마다 80원
어린이	450원	450원	- 10~50km : 5km마다 50원 - 50km 초과시 : 8km마다 50원

2) 버스와 환승통행 시 요금

- 요금체계 : 수도권 대중교통 통합환승할인제(거리비례제)
- 기본요금 : 환승 시 이용한 수단 중 높은 기본요금, 10km 이내
(단, 광역버스는 기본요금 30km 이내)
- 추가요금 : 10km 초과시 5km마다 100원(청소년 80원, 어린이 50원)
- 통합환승할인제 적용기준
 - 승·하차시에 모두 교통카드를 단말기에 접촉하여야 환승할인 적용
 - 환승횟수는 5회 탑승까지 인정, 6회 탑승부터 별도통행 처리
 - 앞 교통수단 하차후 다음 교통수단 승차시까지의 갈아타는 시간이 30분 이내에서만 통합요금제 적용(단, 21시~07시까지 60분)

다. 요금산출 기초자료

- 협약상 근거에 따라 서울시 지하철 요금제와 수도권 대중교통 통합 환승할인제 적용(붙임 참조)

라. 요금 감면대상 및 감면비율

- 서울시 지하철 요금 감면대상, 감면비율과 동일 (붙임 참조)

마. 요금 징수방법 : 수도권 교통카드시스템 징수 방식(붙임 참조)

사. 유사시설의 요금 수준 : 붙임 참조

3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

-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25조(시설사용 내용)
-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시행령 제23조(사용료)
- 서울특별시 민간투자사업에 관한 기본 조례 제 13조(사용요금의 의회 의견청취)

나. 예산조치 : 사업시행자와 체결한 실시협약에 따른 기준운임과 최초요금간의 차액 및 무임승차에 따른 요금 손실 중 실시협약 범위 내의 부분에 대해 예산으로 지원 필요

※ 현재 공기연장 및 사업비 증액 등으로 최종 기준운임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로 향후 도시기반시설본부의 준공정산을 통해 최종 기준운임이 결정되면, 그 기준운임을 토대로 예산지원

다. 합 의

- 최초운임신고 관련 사업시행자와 사전합의
 - 실시협약에 따른 수도권 대중교통 통합환승할인제 적용 확인
- 도시기반시설본부에서 총사업비 변경 관련 내용 확인
 - 총사업비 및 운영비 변경 확인(도시철도계획부-9178(2021.11.18.)호, 9447(2021.11.25.)호

라. 기 타 (서울공공투자관리센터 협의결과)

- 최초요금은 사업시행자와 서울시간의 합의를 통해 결정되었으므로 서울공공투자센터가 검토할 대상이 아님

따로 붙임 : 최초요금 산정관련 자료

※ 작성자 : 도시철도과 민자철도혁신팀 이승후 (☎ 2133-4350)

1. 최초요금

가. 최초요금 산출근거

- 실시협약 제54조(운임의 결정 및 조정)
 - ② 사업시행자는 운영기간 중 <부록10>(운임수준 및 운임조정)의 범위 내에서 운임을 결정 및 조정하되 주무관청의 대중교통 요금정책을 준수하여야 한다.

실시협약 <부록10>

1. 기준 운임 산정(2007년 7월 1일 불변가격기준)
 - 요금제 : 수도권 대중교통 통합환승할인제
 - 기준운임 : 1,065원(10km 이내)
 - ...(후략)...

- 사업시행자가 제출한 최초운임신고서(남서울 2021-1027('2021.11.29.)호)

나. 신림선 최초요금

1) 도시철도 단독통행 시 요금

- 요금체계 : 서울시 지하철요금제(거리비례제)
- 요금현황

구 분	기본요금 (10km이내)		추가요금 (10km초과)
	카드	현금 (일회용 승차권)	
일 반	1,250원	1,350원	- 10~50km : 5km마다 100원 - 50km 초과시 : 8km마다 100원
청소년	720원	1,350원	- 10~50km : 5km마다 80원 - 50km 초과시 : 8km마다 80원
어린이	450원	450원	- 10~50km : 5km마다 50원 - 50km 초과시 : 8km마다 50원

2) 버스와 환승통행 시 요금

- 요금체계 : 수도권 대중교통 통합환승할인제(거리비례제)
- 기본요금 : 환승 시 이용한 수단 중 높은 기본요금, 10km 이내
(단, 광역버스는 기본요금 30km 이내)
- 추가요금 : 10km 초과시 5km마다 100원(청소년 80원, 어린이 50원)
- 통합환승할인제 적용기준
 - 승·하차시에 모두 교통카드를 단말기에 접촉하여야 환승할인 적용
 - 환승횟수는 5회 탑승까지 인정, 6회 탑승부터 별도통행 처리
 - 앞 교통수단 하차후 다음 교통수단 승차시까지의 갈아타는 시간이 30분 이내에서만 통합요금제 적용(단, 21시~07시까지 60분)

2. 요금 할인 및 감면 대상

대 상	할인율	관련 법규	비 고
어린이	50%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운송약관 ○ 청소년복지지원법 제3조 	만6세~만12세
청소년	20%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청소년복지지원법 제3조 	만13세~만18세 만24세 이하 학교 재학생
경로 우대	100%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노인복지법 제26조 	만65세 이상 (영주권자 포함)
국가 유공자	100%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법률 제66조 ○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22조 ○ 5·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58조 ○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(제73조) 	해당자
장애인	100%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장애인복지법 제30조 	중증장애인 보호자1명 포함

3. 요금 징수 방법

징수방법		여객 구분	결제 수단	장소
발권	통합발매기(1회권)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공용 (노인 등 무임포함)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현금 장애인등록증, 국가유공자증, 주민등록증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대합실
징수	자동개집표기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공용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선후불 교통카드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대합실
	자동정산기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공용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1회용 교통카드 선후불 교통카드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대합실 (Paid Zone)

4. 유사시설의 요금 수준

기관명	기본 운임	운임체계
한국철도공사	1,250원	○ 거리비례제(통합환승할인제) - 기본운임 : 10km까지 1,250원 - 추가운임 · 10km ~ 50km : 매 5km마다 100원 추가 · 50km초과 : 매 8km마다 100원 추가 - 수도권 내,외를 연속하여 이용 시 수도권 내 운임을 먼저 적용한 후 수도권 외(평택~신창, 가평~춘천) 구간은 4km마다 100원씩 추가
서울교통공사	1,250원	
서울시메트로9호선	1,250원	
인천교통공사	1,250원	
공항철도	1,250원	○ 거리비례제(통합환승할인제) - 구간 : 서울역~인천공항2터미널역 - 수도권 내,외를 연속하여 이용 시 수도권 내 운임을 먼저 적용한 후 수도권 외(평택~신창, 가평~춘천) 구간은 4km마다 100원씩 추가 ○ 독립운임제(거리비례제) - 구간 : 청라국제도시역~인천공항2터미널역 - 기본운임 : 10km까지 900원 - 추가운임 : 10km초과시 1km당 130원 ○ 독립운임제(직통열차 거리비례제) - 구간 : 서울역~인천공항2터미널 - 기본운임 : 3,062원 - 추가운임 : 10km초과시 1km당 265원
신분당선	1,250원	○ 거리비례제(통합환승할인제) + 별도운임 - 별도운임 : 강남~정자(1단계), 정자~광교(2단계) * 각 구간만 이용시 : 1,000원 1~2단계 구간 연계이용시 : 1,300원
용인경량전철	1,250원	○ 거리비례제(통합환승할인제) + 별도운임(200원)
의정부경전철	1,250원	○ 거리비례제(통합환승할인제) + 별도운임(300원)
김포도시철도	1,250원	○ 거리비례제(통합환승할인제)
서해철도	1,250원	○ 거리비례제(통합환승할인제)
부산교통공사	1,300원	○ 이동구간제 - 1구간(10km이내) : 1,300원, - 2구간(10km초과) : 1,500원
대구도시철도공사	1,250원	○ 균일제 / 전구간 동일운임 : 1,250원
광주도시철도공사	1,250원	○ 균일제 / 전구간 동일운임 : 1,250원
대전도시철도공사	1,250원	○ 이동구간제 - 1구역(10km이내) : 1,250원 - 2구역(10km초과) : 1,350원

5. 역별 운임표 (교통카드 기준)

(단위 : 원)

OD	셋강	대방	서울지방 병무청	보라매	보라매 공원	보라매 병원	당곡	신림	서원	서울대 벤처타운	관악산
셋강	-	1,250	1,250	1,250	1,250	1,250	1,250	1,250	1,250	1,250	1,250
대방	1,250	-	1,250	1,250	1,250	1,250	1,250	1,250	1,250	1,250	1,250
서울지방병무청	1,250	1,250	-	1,250	1,250	1,250	1,250	1,250	1,250	1,250	1,250
보라매	1,250	1,250	1,250	-	1,250	1,250	1,250	1,250	1,250	1,250	1,250
보라매공원	1,250	1,250	1,250	1,250	-	1,250	1,250	1,250	1,250	1,250	1,250
보라매병원	1,250	1,250	1,250	1,250	1,250	-	1,250	1,250	1,250	1,250	1,250
당곡	1,250	1,250	1,250	1,250	1,250	1,250	-	1,250	1,250	1,250	1,250
신림	1,250	1,250	1,250	1,250	1,250	1,250	1,250	-	1,250	1,250	1,250
서원	1,250	1,250	1,250	1,250	1,250	1,250	1,250	1,250	-	1,250	1,250
서울대벤처타운	1,250	1,250	1,250	1,250	1,250	1,250	1,250	1,250	1,250	-	1,250
관악산	1,250	1,250	1,250	1,250	1,250	1,250	1,250	1,250	1,250	1,250	-

※1회권 이용시 상기 금액에 100원씩 가산